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 준수 및 인증 의무화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58호)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76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김위상의원안(의안번호 제2202458호)	1
2. 조지연의원안(의안번호 제2203376호)	2
III. 검토의견	4
1. 무공해자동차의 정의 법률로 상향	4
2.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 준수 및 인증 의무화	11
3.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정보 공유 등	25
※ 참고자료	29
1.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9
2. 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	31
3. 전기승용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33

I. 제안경위

2024년 7월 31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8월 29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위상의원안(의안번호 제2202458호)

2023년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행 법령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나 배출허용기준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효수명 내구 등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행거리 감소,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가목, 제46조제5항·제6항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2. 조지연의원안(의안번호 제2203376호)

2024년 8월 1일에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의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무공해자동차가 제작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은 배출허용기준만 충족하면 성능,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상황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높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에는 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의 보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급 기준을 충족한 무공해자동차에만 보급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의2·제46조의2 신설 및 제58조제3항).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8조의9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무공해자동차의 정의 법률로 상향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위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의2. (생략)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u>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u>	제2조(정의) ----- ----- -----. 1. ~ 15의2. (현행과 같음) 16. ----- ----- ----- -----. <u>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u>	제2조(정의) ----- ----- -----. 1. ~ 15의2.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현행	김위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나. (생략) <u><신설></u>	<u>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u> 나. (현행과 같음)	16의2. “무공해자동차”란 <u>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u> 가. <u>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u> 나. <u>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u> 다. <u>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u>

[illegible]

현행법 제2조제16호¹⁾에서는 ‘저공해자동차’를 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②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²⁾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제1종), 하이브리드자동차(제2종) 등을 저공해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58조의2제2항³⁾에서는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무공해자동차’로 약칭하고, 시행령 제52조의3⁴⁾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1)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2)시행령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3)법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시행령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⁵⁾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무공해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별표 6의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종(무공해)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법 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6의2] 일부

그런데 현행법 및 시행령의 각기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에서도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의 배출이 없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무공해자동차’로 통합하여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법적 이해도를 제고하고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분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김위상의원안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친환경자동차법」 상의 정의 조항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지연의원안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의 정의 조항을 인용하는 대신 동일하게 서술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⁶⁾을 고려할 때 법률 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김위상의원안 및 현행 시행령과 같이 인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27년 1월 10일 시행 예정인 LCA (Life Cycle Assessment,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⁸⁾ 정의에 따라 자동차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7)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서도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친환경자동차법」의 정의 조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8) 법률 제19960호 「대기환경보전법」 (2024. 1. 9., 일부개정, 2027. 1. 10. 시행) 제2조(정의) 21의2.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의 제조 전(원료의 채취·가공 및 소재·부품의 제조·

의 제조 전·제조·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계를 산출하게 되면 현재 ‘무공해자동차’에 속하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또한 엄격한 의미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무공해자동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공해자동차’의 정의 자체에 대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여 무공해자동차의 법적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임.

가공 등의 과정을 말한다),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자동차 전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 준수 및 인증 의무화

개정안은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무공해자동차에 맞는 제작기준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기준에 맞추어 무공해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김위상의원안 제46조제5항 및 조지연의원안 제46조의2 신설),

무공해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현행 내연기관차량과 같이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김위상의원안 제48조제2항 신설 및 제56조제1항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위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46조(제작차의 배출 허용기준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6조(제작차의 배출 허용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무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환경성능(이하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이라 한다)이 환경부령</u>	

현행	김위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신설> <신설>	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무공해자동차 성능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무공해자동차의 보급기준 등)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높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무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급기준에 맞도록 무공해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생략)	제46조의2(현행과 같음)	제46조의3 (현행 제46조의2와 같음)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생략)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현행과	

현행	김위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 ----- -.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 ----- ----- ----- -----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에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 ----- ----- ----- ----- ----- ----- ----- ----- -----.	

현행	김위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변경보고, 인증의 면제·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②(생략) ③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제48조제6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생략) 제5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⑦ -----제6항----- ----- ----- ----- ----- ----- ----- ----- -----.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8조제7항----- ----- ----- -----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인증의 취소) - ----- -----	

현행	김위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당하는 경우에는 인 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인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생략)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u>제 작차배출허용기준</u> 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4. (생략)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작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자 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 를 곱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 억원을 초과할 수 없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 <u>작차배출허용기준</u> <u>또는 무공해자동차</u> <u>성능기준</u>----- 3.·4. (현행과 같음)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 ----- ----- ----- ----- ----- ----- ----- -----.	

현행	김위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다.	-----.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 제48조제1항 및 제2항-----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 ----- ----- ----- ----- -----.	

현행	김위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 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변경인 증을 받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2. 제48조제3항-- ----- ----- ----- ----- -----	
4의3. ~ 13. (생략)	4의3. ~ 13.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 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 ----- ----- ----- -----.	
1. 제48조제3항에 따 른 변경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 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자	1. 제48조제4항----- ----- ----- ----- -----	
1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변 경인증·변경보고 의 표시를 하지 아 니한 자	1의2. 제48조제6항-- ----- ----- ----- -----	
1의3. ~ 3. (생략)	1의3. ~ 3. (현행과 같음)	

현행	김위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6조⁹⁾에서는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에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공해자동차·건설기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규정¹⁰⁾하고 있음.

그런데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평가기준(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무공해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성능 확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음.

9) 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참고자료 1) 제작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참고자료 2) 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별표 6의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종(무공해)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법 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6의2] 일부

이에 개정안은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등 무공해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성능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려는 것(김위상의원안 제46조제5항·조지연의원안 제46조의2)으로, 내연기관 차량과는 구조가 다른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성능기준을 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¹¹⁾에서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를 제작하기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받

11) 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거나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김위상의원안 제48조제2항은 현행 내연기관차량과 같이 자동차제작자가 무공해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무공해자동차환경성능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저성능 무공해자동차의 시장 도입을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기존의 배출가스 관련 기준 이외의 무공해차 환경성능기준·인증제도 신설에 대한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이해관계자¹²⁾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토교통부에서는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¹³⁾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있고, 하위법령¹⁴⁾에서 자동차의 원동기

12)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서는 현재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서 무공해자동차와 관련하여 성능기준을 각각 운용하고 있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대기오염물질로서의 배출가스 규제 이외의 성능기준을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경우 중복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 부처간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3)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1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제106조(원동기 출력)

제108조의2(연료소비율)

출력, 연료 소비율 기준 등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가스 이외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하고,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¹⁵⁾

둘째, 김위상의원안·조지연의원안은 무공해자동차 성능기준에 부합하는 제작 의무를 별도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 제46조제1항단서¹⁶⁾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 및 제58조¹⁷⁾

15) 2025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하여 시정조치·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2의2.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16) **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7)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⑱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②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나. 충전에 걸리는 시간

다.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2. 전기건설기계의 경우

에 따른 구매보조금 지급을 위한 성능평가와 그 실질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기준에서 무공해자동차를 제외하고, 보조금지급성능평가과 무공해자동차 성능기준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저공해자동차 관련 평가 기준]

근거 규정	현 행	개정(안)
·법 제46조제1항(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6의 2] 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배기관 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입자상물질	(좌 동)
·법 제58조제19항 (보조금 성능평가) 및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¹⁸⁾	·1회충전 주행거리 ·최대등판능력 ·인터록 안전장치 ·주 배터리 차단장치 ·비상등 작동 여부 ·배터리 종류 ·충전 규격·속도(완속/급속) ·충전상태 표시 ·배터리 방전경고 ·기타 표시사항 (주배터리 용량표시, 구동 가능 배터리 최저치 표시, 주요 전력소비 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등	(좌 동)
·김위상의원안 제46조제5항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 기준)	—	·1회충전 주행거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조지연의원안 제46조의2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기준 등)		·1회충전 주행거리,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배터리 내구성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가. 전기건설기계의 구성 및 전기장치의 제원

나. 그 밖에 전기건설기계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18) (참고자료 3) 전기승용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 1])

셋째, 김위상위원안 제56조에서는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기준의 인증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¹⁹⁾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과 벌칙을 모두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인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19) **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정보 공유 등

개정안은 ① 저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시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② 환경부장관이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조지연의원안 제58조의9 제2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조지연의원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② (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보급 또는 관리</u> ----- ----- ----- ----- ----- ----- -----.
1.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u>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1. <u>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는 제46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저공해자동차에 한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 또는 운행하는 자.</u> ----- -----

현행	조지연의원안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용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용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생략)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 라. (생략) 3. ~ 6. (생략) ④ ~ ⑱ (생략)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생략) <신설>	----- ----- ----- ----- ----- ----- -----. 1의2. (현행과 같음) 2. ----- ----- ----- <u>설치 또는 운영하는</u> ----- 가. ~ 라.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⑱ (현행과 같음)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u>

첫째, 현행법 제58조제3항²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된 수소버스의 보증기간(5년 또는 50만 km) 경과 이후 엔진 역할을 하는 수소스택 교체 지원²¹⁾, 수소충전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²²⁾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저공해차 구입·충전시설 설치보다 넓은 범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①저공해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자와 ②충전시설을

20)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 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 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 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 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 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 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21) 무공해차 보급사업(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11) - 수소차 보급 - 스택교체지원

22) 무공해차 충전인프라구축(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12) - 운영비 - 수소충전소 연료 비 보조금 지원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공해자동차의 시장 정착 및 2030 무공해차 보급목표(450만대) 달성을 위하여 보다 폭넓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 제58조의9²³⁾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

현재 환경부에서는 무공해차누리집(ev.or.kr)을 통해 가까운 충전소 찾기(위치), 충전소별 충전 요금,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 전기차 충전·주차 관련 화재로 인하여 화재예방·대응에 도움이 되는 보다 세부적인 정보 또한 함께 수집·관리하겠다는 계획임.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상태 정보 등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공해차 충전 및 운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6

23) 법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참고자료

1.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시행규칙 [별표 1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2. 12. 28.>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62조 관련)

1.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

가. ~ 사. (생 략)

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블로바이 가스		포름알 데히드	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자동차, 중형 승용· 화물자동차	기준 1	2.61g/km 이하	—	0.100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 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	0.087g/km 이하	—	—	—	US06 모드
		2.0g/km 이하	—	0.062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2	1.31g/km 이하	—	0.078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 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	0.075g/km 이하	—	—	—	US06 모드
		2.0g/km 이하	—	0.044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3	1.06g/km 이하	—	0.044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 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	0.075g/km 이하	—	—	—	US06 모드
		2.0g/km 이하	—	0.044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4	1.06g/km 이하	—	0.031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 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	0.075g/km 이하	—	—	—	US 06 모드
		2.0g/km 이하	—	0.044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5	0.625g/km 이하	—	0.019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 / km 이하	CVS-75모드
		5.97g/km 이하	—	0.031g/km 이하	—	—	—	US06모드
		2.0g/km 이하	—	0.012g/km 이하	—	—	—	SC03모드
	기준 6	0.625 g/km 이하	—	0.0125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 / km 이하	CVS-75모드
		5.97g/km 이하	—	0.031g/km 이하	—	—	—	US06모드
		2.0g/km 이하	—	0.012g/km 이하	—	—	—	SC03모드
	기준 7	0g/km 이하	—	0g/km 이하	0g/1주행	—	0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 · 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 · 화물자동차		4.0g/kWh 이하	0.40g/kWh 이하	0.14g/kWh 이하	0g/1주행	—	WHTC 모드

2. 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6의2])

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

I. 저공해자동차

1.~ 7. (생략)

8. 2020년 4월 3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종 (무공해)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방법

나.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제2종	휘발유, 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0.625g/km 이하	0.019g/km이하		0.002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01 g/kWh	WHTC 모드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차종별 적용시기, 그 밖에 암모니아·메탄 등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목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다. 휘발유·가스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 수소 (배기관 가스)	블로 바이 가스	중발 가스	입자상 물질	암모 니아	메탄	측정 방법
제3종	경자동차, 소형승용· 화물, 중형승용· 화물	0.625g/km 이하	0.019g/km 이하		0g/1주행	0.35g/테 스트 이하	0.002g/ km 이하	—	—	CVS-75 모드
	대형 승용· 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초대형 승용· 화물									
--	------------------	--	--	--	--	--	--	--	--	--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US06 모드와 SC03 모드 배출허용기준 및 결함확인 검사 배출허용기준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증발가스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가스자동차의 경우 입자상물질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3. 전기승용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 1])

전기승용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항 목		평가기준
1. 1회 충전 주행거리		상온 : 120km 이상(초소형차는 도심주행거리 60km 이상) 저온 : 상온주행거리의 70 % 이상(초소형제외)
2. 최대등판능력		25 % 이상
3.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해야 함
4. 주 배터리 차단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야 함
5. 비상등 작동 여부		주 배터리가 분리·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 이상 연속 작동해야 함
6.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동충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함
7. 자동차 운영환경		95% 이상 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 ~ 40℃ 사이에 7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해야 함
8. 충전규격		국내 관련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함
9. 충전속도 (최대 충전전류)	완속 충전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30 A 이상(초소형 제외)
	급속 충전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100A(AC3상의 경우 59A) 이상(초소형 제외)
10. 충전상태 표시 계기판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11. 배터리 방전경고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12. 기타 표시사항		주 배터리 용량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또는 실시간 에너지소비효율 표시